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7일, 박대출의원 등 10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

론,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대출의원)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2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안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생명공학에 결합하는 기술을 굳이 첨단기술로 한정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안 제13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융복합연구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 대상을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며,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부처 대상 수요조사, 민간의 지정요청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 규정의 체계를 정리하고,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심의 결정 사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

나.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고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다.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기본계획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 방법”을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로 한다.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생명공학 관련 국제기구”를 “국제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우리나라의”를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18조제1항 중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을 “인력수급을 전망”으로,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을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3. (생략)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현행과 같음)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 난이
도의 적절성

3. 신기술 및 신산
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
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
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

1. (개정안과 같음)

2. 기술개발의 도
전성 및 혁신성

3. ~ 5. (개정안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 절차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u>지정을 위한 수</u> <u>요조사 및 지정요</u> <u>청 등 지정 절차</u>-- ----- ----- ----- ----- -----
--	--	---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략)

<신 설>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 연구 관련 연구 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 연구 관련 연구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 연구 관련 기술 혁신 성과의 실용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

-----,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

-----,
1.2. (개정안과 같음)

3. -----

-----사업
화-----

4.5. (개정안과 같음)

	연구 전문인력 양성	음)
	5. 그 밖에 생명공 학 융복합연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융복합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국제협력의 추 진) <u>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u>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 성화를 위하여 국제 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 진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 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3조(국제협력의 추 진) ① <u>정부는</u> ----- ----- ----- ----- ----- -----.
<신 설>	② <u>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u> 제1항 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 국의 정부, 생명공 학 관련 국제기구 와 연구개발 기관	② <u>정부는</u> ----- ----- ----- ----- -----국제기구 -----

<u>· 단체 등과 협력</u>	-----
<u>하여 다음 각 호의</u>	-----
<u>사업을 할 수 있다.</u>	-----.
<u>이 경우 과학기술</u>	----- <u>정부는</u>
<u>정보통신부장관은</u>	-----
<u>해당 사업에 우리</u>	----- <u>참여</u>
<u>나라의 기업·대학</u>	<u>를 원하는 우리나라</u>
<u>· 연구기관·의료</u>	<u>의</u> -----
<u>기관 및 생명공학</u>	-----
<u>관련 기관·단체</u>	-----
<u>등을 공동으로 참</u>	-----
<u>여하게 할 수 있다.</u>	-----.
<u>1. 생명공학에 관한</u>	1. ~ 5. (개정안과
<u>국제 공동 연구</u>	같음)
<u>2. 생명공학에 관한</u>	
<u>기술 및 인력 교</u>	
<u>류</u>	
<u>3. 생명공학에 관한</u>	
<u>정보·지식 교류</u>	
<u>및 공동활용 촉</u>	
<u>진</u>	
<u>4. 생명공학에 관한</u>	
<u>연구개발 시설·</u>	
<u>장비의 구축·운</u>	
<u>영에 대한 기술</u>	
<u>협력</u>	

<신 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수요	5. <u>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u> 6. <u>그 밖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6. <u>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정부는-----</u> ----- ----- ----- ----- ----- ----- ----- ----- -----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 -----
--	--	--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인력양성 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전문인력-----
-----.

②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인력수급을 전망-----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

-----.

③ -----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

	<u>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생명공학 관련 데이터의 연계 · 제공 및 공동활 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u> <u>2.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u> <u>3.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 · 단체로의 파견</u> <u>4.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u> <u>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u>	----- ----- -----. <u><삭 제></u> 1. ~ 4. (개정안 제 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	---

	<u>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사항</u>	
--	---------------------------------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
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 확보 필요성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 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
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10. (생략) ③ ~ ⑥ (생략) <u><신설></u>	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u> 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u> <u>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관련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u> <u>2. 기술개발의 도전성 및 혁신</u>

	<u>성</u> <u>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u> <u>와 연관산업으로의 파급성</u> <u>4.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기술</u> <u>확보 필요성</u> <u>5. 그 밖에 심의회에서 중요하</u> <u>다고 인정한 사항</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유망 생명공학기술의 변경 또</u> <u>는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u> <u>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u> <u>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u> <u>른 변경이나 지정 해제가 있는</u> <u>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u> <u>다.</u> <u>⑤ 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u> <u>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u> <u>사 및 지정요청 등 지정 절차,</u> <u>지원 범위 및 내용, 제3항에 따</u> <u>른 변경절차 및 지정 해제절차</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공동·융복합연구의 촉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융복합 연구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수준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

② 정부는 생명공학에 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결합하는 등의 기술 간 융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3.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관련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생명공학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 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우리나라의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 · 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생명공학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2. 생명공학에 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3.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 · 지식 교류 및 공동활용 촉진
4.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구축 · 운영에 대한 기술 협력
5. 생명공학에 관한 공동연구센터 등 협력거점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u><신 설></u>	<u>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 여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대한 지원) (생 략)	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 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u>생명공학 성과의 실증, 시제 품(試製品)의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u> 2. <u>개발된 생명공학 관련 기술 · 제품에 관한 교육과 홍보</u> 3. <u>그 밖에 사업화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 -----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전문인력-----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2. 국내 생명공학 관련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로의 파견
3. 생명공학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전

<신 설>

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산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명공학기술의 표준 개발·보급 및 확산.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보 조사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